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171호
------	-------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승필 의원 외 4명
제출연월일	2022. 11. 14.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1호

발의연월일 : 2022. 11. 14.

대표발의자 : 서승필

공동발의자 : 이태모, 조배식,
장진호, 윤금숙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급되는 의원 월정수당을 논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논산시의원 월정수당 지급액 현행화(안 제3조)

구분	기간	금액	비고
개정전	2020년~2022년	1,758,770원	
개정후	2023년~2026년	2,042,7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 : 2022. 11. 14. ~ 11. 18.(5일간)

□ 개정조례안

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758,770원” 을 “2,042,700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20년부터 2022년” 을 “2023년부터 2026년”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의원	서승필 의원 외 4명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논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게 월정수당으로 <u>1,758,770원</u>을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② <u>2020년부터 2022년까지</u>의 매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인상한다.</p>	<p>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 ----- -----<u>2,042,700원</u> ----- -----.</p> <p>② <u>2023년부터 2026년</u>----- ----- ----- -----.</p>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

- 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